##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3 발의연월일 : 2024. 7. 12.

발 의 자:김위상·박충권·임이자

김형동 · 김성원 · 김선교

최은석 · 김승수 · 주호영

우재준 · 서범수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,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,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,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7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8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중 "제122조제1항에"를 "제122조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"을 "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·재적용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외파견자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	제47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
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<u>제</u>	① <u>*</u>
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	122조에
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(이하	
"해외파견자"라 한다)의 산재보	
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	
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	
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	
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	
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, 산	
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	
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	
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	
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
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	②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
<u>견자에 대한 보험가입</u> 신청 및	<u>용 제외·재적용의</u>
승인,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	
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	
부렁으로 정한다.	
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	<u>&lt;</u> 삭 제>
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	
여는 제5조제4항·제5항·제7	
항,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	
용한다.	